

에미넌트·인터내셔널 스칼라 제도 운영 규정

시행일: 2023. 07. 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에 규정된 에미넌트 스칼라(Eminent Scholar, 이하 ES라 한다) 및 인터내셔널 스칼라(International Scholar, 이하 IS라 한다)의 자격, 임용절차, 임무, 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ES는 세계적 수준의 학자 또는 실천가로서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미래 지향적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증진, 그리고 본교의 대학운영 기조 및 정책자문을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② IS는 연구역량이 탁월한 학자로서 본교의 연구성과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ES는 Kyung Hee Eminent Scholar(경희 ES)로 칭한다.

② IS는 Kyung Hee International Scholar(경희 IS)로 칭한다.

③ ES와 IS는 연구실적물 발표 및 게재 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① ES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적 업적이 인정되는 자
-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 특정분야의 연구 실적이 현저하여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자
- 기타 ES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② IS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외국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연구·교육 경력의 소유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영향력 있는 저서, 창작 등의 실적을 보유한 자
 - 기타 IS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③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자는 ES-IS가 될 수 없다. 단,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초빙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ES와 IS의 구체적인 초빙자격, 기준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ES-IS는 호스트 교수의 신청과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추천하거나, ES-IS 초빙위원회 위원 또는 연구소(원)장 등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ES-IS 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호스트 교수는 전임교원으로서 ES-IS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ES-IS의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제6조(ES-IS 초빙위원회) ① ES-IS 초빙위원회(이하 '초빙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캠퍼스별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 각 캠퍼스 학무부총장(위원장), 의무부총장(의학계열 ES-IS 초빙에 한함), 각 캠퍼스 교무처장, 연구처장

③ 임명직 위원: 캠퍼스 특성을 반영한 전공계열 전임교원 3~5명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초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후보자의 자격
- 임용기간, 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⑤ 제5조 제1항에 따라 ES-IS 초빙위원회 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7조(임용기간) ① ES와 IS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임용기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단,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초빙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ES와 IS가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ES와 IS의 임용기한은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일을 종료일로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임용기한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한을 달리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8조(구비서류) ① ES 또는 IS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1. 초빙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2. 이력서

3. 추천자의 추천서

4.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회의록

② ES 또는 IS 재임용 추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

2. 활동보고서(별지 서식 제2호) 및 증빙자료

③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무) ES와 IS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강의, 강연, 본교 교원과의 공동연구, 세미나 등 학술활동

2. 교육, 연구, 실천, 연계협력, 국제교류 등에 관한 자문

3. 학술 및 실천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본교의 비전, 운영 기조와 정책 자문

5. 단과대학, 학과(전공), 행정부서, 부속기관, 연구소(원)의 발전계획 자문

제10조(연구결과물의 귀속) ES와 IS가 임용기간 동안에 본교의 지원에 의해 생성한 지적재산은 본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 ① ES와 IS의 급여 및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② ES 또는 IS의 실적이 뛰어날 경우, 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ES와 IS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왕복항공권

2. 숙소지원금

3. 연구실

④ 처우조건은 각 ES 또는 IS와 개별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보칙)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과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ES와 IS 임용 시에는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기 시행일 기준 본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제3조(명칭)을 적용하여 신규 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ES 또는 IS 중 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

약 종료 후 도래하는 재임용부터 제7조(임용기간) 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minent/International Scholar 초빙신청서

▪ 초빙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적
학력사항	주요경력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초빙 직전 5개년)
- 학위명, 연도, 학교명, 전공	- 연도, 직급, 학교명	- 국제논문 실적 ○건 (SCIE, SSCI, A&HCI)
-	-	- 국제논문 피인용 ○○회
-	-	

▪ 초빙 조건

구분	요청(인)		비고
임용 내용	직급	<input type="checkbox"/> ES <input type="checkbox"/> IS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임용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임용 <input type="checkbox"/> 재임용	
	소속	대학(원) 학과	
초빙 기준	□ 기준 1 (총 피인용 수)	<input type="checkbox"/> 인문·체육 <input type="checkbox"/> 사회 <input type="checkbox"/> 자연·공학 <input type="checkbox"/> 의학 <input type="checkbox"/> 예술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 기준 2 (FWCI 및 국제논문 건수)	<input type="checkbox"/> 인문·체육 <input type="checkbox"/> 사회 <input type="checkbox"/> 자연·공학 <input type="checkbox"/> 의학 <input type="checkbox"/> 예술	
	□ 기준 3 (정성 기준)	<input type="checkbox"/> 인문·체육 <input type="checkbox"/> 사회 <input type="checkbox"/> 자연·공학 <input type="checkbox"/> 의학 <input type="checkbox"/> 예술	
상세 조건	초빙 기간		1년 단위
	의무사항	구분	의무사항
		연구	
		교육	
		기타	
특이사항	처우	구분	상세 조건
		급여	
		인센티브	
		기타 (수수료 등)	

년 월 일

HOST 교수	대학(원)	학과	(인)
행정실 경유	대학(원)	행정실장	(인)
대학(원)장	대학(원)	학과	(인)

※ 상기 조건은 초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첨부서류: 해당교원 CV,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Host교수 작성 추천서(자유양식), 심의를 위한 기타 자료,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재임용 신청 시) 제출

Eminent/International Scholar 연구활동결과 보고서**1. 인적사항**

Host 교수	소 속		성 명	
초빙 교수	직 급	<input type="checkbox"/> ES <input type="checkbox"/> IS	임용기간	
	소 속		성 명	

2. 연구활동결과 보고

가. 공동연구

1) 의무사항:

2) 연구실적물 리스트 (주저자 게재)

연번	연구 실적	논문제목 (paper title)	게재(예정)일 (published date)	게재 학술지명 (name of journal)	게재 저널의 상위 25%(Q1) 해당 여부
1					
2					
3					
4					
5					

※ 연구실적: SCIE, SSCI, A&HCI 등으로 표기

※ 게재 예정인 경우, 게재 예정 확인서 첨부 필수

※ JCR (Web of Science) 또는 CiteScore (Scopus) 지표에서 상위 25%(Q1)에 해당하는 경우 표기

나. 교육 및 활동 (강의, 세미나, 대학원생 지도, 자문 등)

1) 의무사항:

2) 기타 활동 현황 (Seminar & Other Activities)

연번	연구 활동 구분	일 시	활동내용	비 고
1				
2				
3				

※ 연구 활동 구분: 강의, 세미나, 대학원생 지도, 자문 등

다. 특이사항:

3. 재임용의사 여부 Y N※첨부: 연구실적물 및 기타활동 증빙자료

년 월 일

HOST 교수

대학(원)

학과

(인)

행정실 경유	대학(원)	행정실장	(인)
대학(원)장	대학(원)	학과	(인)